



County of San Diego

보건 사회 복지국(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
공중 보건 복지(PUBLIC HEALTH SERVICES)

공중 보건 책임관 명령 및 비상 규제 (ORDER OF THE HEALTH OFFICER AND EMERGENCY REGULATIONS) (2020년 9월 10일부터 발령)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및 안전법 제 101040 항, 제 120175 항, 그리고 제 120175.5 (b)항에 의거하여, 샌디에고 공중보건 책임관(보건 책임관)은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본 명령은 목요일 오전 12:01 시, 2020년 9월 10일에 발효되어 추가로 고지가 있을 때까지 유효하며, 다음과 같이 샌디에고 카운티에 시행 적용됩니다(카운티):

1. 하기 10 및 11 항에 정의된 필수 직종 업체 또는 영업을 재개하는 사업체로 출퇴근을 하는 직원과 고객들, 또는 본 명령에서 개인 또는 가족의 야외 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외출을 삼가고 자택이나 주거지에 머물러야 합니다.
2. 이하 제 15 항에 명시되어 있는 모든 대중 또는 개인 “집합” 활동을 금지합니다.
3. 모든 공립학교, 차터 학교 및 사립학교는 주 정부가 허용하는 하에서 [COVID-19 업계지침: 학교와 학교 기반 프로그램](#)을 준수할 때 수업과 기타 학교 활동을 할 수 있고 주정부 지침은 업데이트되거나 추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은 주 정부가 허용하는 하에서 [COVID-19 업계지침: 고등 교육기관](#)을 준수할 때 고등 교육 기관 및 주정부 지침은 업데이트되거나 추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해당 주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작업장 별 구체적인 COVID-19 예방 계획안을 문서화하여 일반 교육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및 위생 프로토콜 또는 안전한 영업 재개 계획안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주간 보육 기관 및 보육 제공자는 주 정부의 [COVID-19 업계 지침: 보육 프로그램과 제공자](#)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육 기관과 프로그램 제공자는 이하 제 11c 항에 따라 안전한 시설 재개방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게재합니다.

5. 하기 제 15b 항에 명시된 “비 필수 근무 인원”의 모든 병원 또는 장기 요양 시설 출입을 금지합니다.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 19 의 잠재적 징후 또는 감염 증상을 보이는 모든 필수 근무 인원의 병원 또는 장기 요양 시설 출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상기 사항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병원이나 의료 시설이 코로나 19 을 치료하기에 적합하고, 그리고 해당 시설이나 기관의 환자, 의료진 및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다면, COVID-19 또는 관련 의료 상황에 대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이나 기타 의료 시설의 입원이 가능합니다.
6. 병원 및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a. 자원을 보존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 b. 주 정부 지침과 일관성 있게 임상학적 필요, 공급/수용 역량에 따라 비 응급 또는 대기 수술 및 선택적 시술을 승인하고 수행함에 합니다.
 - c. 본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관련 주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의사 및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일상적인 예방 치료를 수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 d. 본 명령의 어떤 내용도 관련 주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치과 의사 또는 치과 위생사가 일상적인 예방 치료를 수행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7. 병원, 의료 서비스 제공자, 약국, 그리고 민영 검사 실험실은 모든 실험실 검증을 받을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를 수취하는 즉시 공중 보건 책임관(Public Health Officer)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8. 2020 년 6 월 18 일자 발표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안면 가리개 지침, (참조: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_06-18-2020.pdf)에 기술된 바에 따라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9. 하기 제 10 항에 따라 명시된 필수 연계업체 또는 영업을 재개하는 사업체로 정의되지 않는 모든 사업체는 “비필수 사업체”로 분류하며 본 명령 발령 기간 동안 폐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 연계업체와 영업을 재개하는 사업체는 반드시 본 명령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기 준수 사항 하에서, 모든 영업 업종의 종사 직원이나 업주는 재택 근무를 포함하여 자택에서 대중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10. 필수업체
 - a) “필수 업체”란 주 정부 공중 보건 책임관이 “필수 주요 사회 기반 시설 근로자” 로 지정한 사업체 또는 활동(또는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활용하는 사업체/활동)으로

<https://covid19.ca.gov/img/EssentialCriticalInfrastructureWorkers.pdf>)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은 수시로 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행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제 N-33-20 호를 참조하십시오.

- b) 모든 필수 업체 영업을 재개할 때 반드시 “코로나 19 음식점 재개업 프로토콜 (“Social Distancing and Sanitation Protocol”)을 준비하여 영업장에 게재합니다. (양식 참조: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Community_Sector_Support/BusinessesandEmployers/SafeReopeningPlanTemplate.pdf),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카운티 내 영업장에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사회적 거리 및 위생 프로토콜은 해당 시설 입구 또는 근처에 게시해야 하며, 일반인과 직원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각 직원에게 사회적 거리 및 위생 프로토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필수 사업체는 사회적 거리 및 위생 프로토콜을 구현해야 하며, 요구 시 본 주문을 집행하는 모든 기관에 이 프로토콜의 이행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및 위생 프로토콜은 아래 섹션 c 에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 및 위생 프로토콜을 마련하지 않는 사업체는 즉시 문을 닫아야 합니다.
- c)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필수 또는 제시된 조치 및/또는 필수 업계의 특정 부문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와 함께 업계 지침 또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실행했을 때, 해당 분야의 모든 필수 업계는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소독 프로토콜 (상기 섹션 b 항에 따라 준비됨)에 포함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본 명령에 따른 모든 의무적인 조치사항은 사회적 거리 및 위생 프로토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1. 영업 재개

- a. "영업 재개"는 위 섹션 10a 에 정의한 필수 업체가 아닌 사업체는 캘리포니아 주 COVID-19 감염 감축 계획 및 캘리포니아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허용되는 부문 활동 조정 계획에 따라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COVID19CountyMonitoringOverview.aspx>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부가 2020 년 8 월 28 일 발령 주 전역에 걸친 공중 보건 책임자 명령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샌디에이고 카운티에서 즉시 시행되며, { https://www.cdph.ca.gov/Programs/CID/DCDC/CDPH%20Document%20Library/COVID-19/8-28-20_Order-Plan-Reducing-COVID19-Adjusting-Permitted-Sectors-Signed.pdf }에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린 사업은 보건 담당자가 샌디에이고 코로나바이러스 카운티 웹사이트에 다시 열린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게시하고 본 주문서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때 열릴 수 있습니다.

- b. 캘리포니아 주의 '안전한 경제를 위한 청사진'은 영업 부문의 재개를 위한 4 단계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활동 및 영업 단계 차트의 "실질적/단계 2" 컬럼에 제시된 영업 부문은 차트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 i. 활동 및 영업 단계에 제시된 다음 부문의 모든 사업체는 손님이 서비스를 실내에서 이용하려면 모든 손님에게 이름과 전화 번호로 로그인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1. 미용실 및 이발소
 2. 개인 관리서비스
 3. 체육관 및 피트니스 센터
 4. 하기 섹션 g에 따라 레스토랑, 양조장, 바, 맥주 양조장 및 양조장 (식사가 제공되는곳)
- c. 모든 필수 업체의 영업 재개를 할 때 반드시 “COVID-19 음식점 재개 프로토콜 (“Social Distancing and Sanitation Protocol”) 을 준비하여 영업장에 게재합니다. (양식 참조: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hhsa/programs/phs/Epidemiology/covid19/Community_Sector_Support/BusinessesandEmployers/SafeReopeningPlanTemplate.pdf 또는 다른 정부 기관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카운티 내 영업장에 일반에게 공개됩니다. 포장이나 배달을 하지 않는 레스토랑 바, 포도주 양조장, 양조장 및 맥주 양조장은 "COVID-19 레스토랑 운영 프로토콜" 아래 사이트에서 참조 양식을 작성하고 게시해야 합니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dam/sdc/deh/fhd/food/pdf/covid19sdrestaurantoperatingprotocol_en.pdf
- d. 안전한 영업 재개 계획안 (Safe Reopening Plan) 의 모든 산업 의무 지침 조치는 시설 입구 또는 그 근처에 게시해야 하며, 일반인과 직원이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 재개 계획 또는 COVID-19 식당 운영 프로토콜 사본도 근무를 하는 각 직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재개장한 모든 사업체는 안전한 재개 계획 또는 COVID-19 레스토랑 운영 프로토콜을 실행해야 하며, 요구 시 본 명령을 시행하는 모든 시설에 이 프로토콜의 이행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안전 재개 계획 또는 COVID-19 식당 운영 프로토콜은 아래 섹션 e에 요구되는 모든 조치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 안전 재개 계획 또는 COVID-19 레스토랑 운영 프로토콜을 준비 및 준수하지 못한 업체는 즉시 영업을 중지합니다.
- e. 캘리포니아 주가 업계 지침 또는 그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할 때, 영업 재개 사업체의 특정 부문에서 의무적으로 제시한 제한사항 및/또는 조치를 실행해야 할 경우, 해당 부문의 모든 영업재개 사업체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안전재개계획 또는 COVID-19 레스토랑 프로토콜(위 섹션 c에 따라 준비)이 업계 지침의 모든 조치를 말합니다.

본 명령에 따른 모든 의무적인 조치는 또한 사회적 거리 및 위생 프로토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f. 모든 레스토랑, 바, 포도주 양조장, 양조장, 맥주 양조장은 오후 10 시에 시설 내에 있는 이미 입장한 손님은 오후 11 시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을 닫고 열고 청소하는 데 필요한 직원만 오후 11 시부터 오전 5 시까지 시설에 있을 수 있습니다.
- g. 식사를 제공하는 모든 레스토랑, 바, 포도주 양조장 및 맥주 양조장은 손님에게 다음의 모든 조치를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i. 레스토랑에서 자리 배정을 받지 않은 손님에게 음식 또는 음료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 ii. 레스토랑은 받은 손님 중 적어도 한 명의 이름과 전화 번호를 받고 3 주 동안 이름과 전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iii. 손님은 식사를 하면서 항상 안면 가리개를 착용해야 하고 식사를 제공하기 전에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식사가 끝난 후에도 안면 가리개를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12. 고용주는 코로나 19 감염 검사 결과 확진을 받은 직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모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i. 즉시 현지 카운티 공중 보건 사무국에 실험실의 검증을 받은 COVID-19 검사를 통해 감염자로 진단을 받은 직원이 있음을 보고하고, 감염된 직원의 성명, 생년월일 및 연락처 정보를 전달합니다.
- ii. 담당 카운티 공중 보건국의 COVID-19 대응 팀이 직장에서 감염된 직원에게 노출이 된 개인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합니다.
- iii. 안전한 재개를 위한 주의 코로나 19 고용주 행동 수칙 (State's COVID-19 Employer Playbook)에 따라, 코로나 19 에 노출되었을 수 있는 모든 직원 및 계약자(정규 직장의 직원)를 대상으로 감염 노출에 대해 고지를 하고, <https://files.covid19.ca.gov/pdf/employer-playbook-for-safe-reopening--en.pdf> 를 참조하십시오.

13. 야외 레저 활동

- a. 각 대중시설로 이용되는 공원 및 레저 시설 공간 및 시설은 운영에 있어 [주 정부 COVID-19](#) 산업 분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캠프장, RV(레저용 차량) 공원 그리고 야외 레저 활동이 해당됩니다. 공원 운영자는 상기 제 11 항에 기술된 사항을 준수하여, 공원 또는 레저 시설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안전한 시설 재개방 계획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없는 공원 또는 레저 활동 지역/시설은 폐쇄하도록 요구될 수 있습니다.

- b. 야외 레저 개인 교습 그리고 일일 캠프는 주 정부 코로나 19 업계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일 캠프는 공원 내, 그리고 레저 활동 지역/시설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14.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의 의심감염자는 공중 보건 책임관의 명령의 다음 항목: “모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의 검역/격리”, 또는 이후 수정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와 밀접한 접촉한 자는 공중 보건 책임관의 명령의 다음 항목: “코로나 19에 노출된 개인의 검역/격리,” 또는 이후 수정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두 가지 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십시오: https://www.sandiegocounty.gov/content/sdc/hhsa/programs/phs/community_epidemiology/dc/2019-nCoV/health-order.html. 보다 구체적인 격리 또는 검역 명령이 개인에게 발행되는 경우, 해당 개인은 명령에 준수해야 합니다.

15. 본 명령을 발행하는 목적:

- a. “단체 모임”이란 한 공간 또는 한 실내의 공간에 한 사람 이상이 모이게 하는 모든 행사와 회합을 가리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단체 모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i. 한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만으로 구성된 단체 모임.
 - ii. 공항, 대중 교통 수단, 또는 대중 운송 매체의 이용객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기타 공간에서의 활동.
 - iii. 상기 제 10a 항에 명시되어 있는 필수 분야 사업체 그리고 상기 제 11a 항에 기술되어 있는 영업을 재개하는 사업체의 본 명령에 명시되어 있는 기타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활동.
 - iv. 예배의 장소와 종교의식 제공자에 대한 결혼식을 포함한 [종교 예배 장소 및 문화 의식과 문화 의례에 대한 주 정부의 지침](#)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나 결혼 피로연 모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v. 실외 시위 참가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고 안면 가리개를 항상 착용하도록 합니다.
- b. "비-필수 근로자"은 장기 요양 시설 또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보건 직무에 필수적이라고 간주되는 치료, 유지 관리, 지원 또는 행정 작업을 수행하지 않는 직원, 계약자, 또는 일반 대중입니다. 비 필수 근무 인원은 응급의료요원, 또는 주 정부, 연방 정부 또는 지역 공무원, 수사관 또는 법적 의무를 수행하는 의료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 필수 근무 인원은 해당 시설의 원장, 또는 대리 원장이 병원 및 장기 요양 시설의 출입을 허가한 방문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방문자가 인생을 마감하거나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시설 거주자를 방문하는 친구가 가족일 수도 있고, 입원해 있는 자녀를 방문하는 부모일 수도 있고, 또는 시설 원장, 또는 대리원장이 방문이 필요하다가 간주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코로나 19에 대한 연방 정부, 주 정부 및 지역 공중 보건 지침을 준수하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시설이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 c.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 구성원 및 응급의료요원,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춘 및 의료 제공자, 그리고 체온 선별 검사를 실시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과 6 피트 안전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16. 세계 보건기구(WHO)의“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도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을 전 세계적 대유행성 전염병으로 선언한 바, 본 명령을 발행합니다.
- 17. 본 명령은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19 과 같은 전염병의 확산을 늦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법과 노출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경우 감염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개인들을 코로나 19 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현재 알려져 있고 이용 가능한 모범 사례에 근거하여 발행되었습니다. 우리 카운티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인구가 연령, 건강 상태 및 의료 상태를 고려할 때, 코로나 19 에 전염될 경우, 사망을 포함하여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고위험군입니다. 비록 코로나 19 에 전염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앓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COVID-19) 무증상 보균자이거나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감염에 취약한 일반 대중 – 노인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 18. 이 명령에서 지시하는 조치는 코로나 19 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의 수치를 줄이는 데 필수적인 노력이며, 카운티 내에서 코로나 19 의 확산 속도를 늦추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19 의 확산을 줄임으로써 본 명령은 카운티의 귀중하고 제한적인 의료 보건 역량을 보존하여 생명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 19. 본 명령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고 포함하여 발행되었습니다 : a) 2020 년 2 월 14 일 공중 보건 책임관이 발행한 지역 보건 비상 사태 공표(Declaration of Local Health Emergency); b) 2020 년 2 월 14 일 카운티 비상 서비스 국장이 발행한 지역 비상 사태 선포(Proclamation of Local Emergency); c) 2020 년 2 월 19 일에 지역 보건 비상 사태 공표와 지역 비상 사태 선포의 두 가지 상황을 모두 비준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 카운티 감독 위원회(County Board of Supervisors)가 취한 조치; d) 2020 년 3 월 4 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행한 주 비상 사태 선포(Proclamation of a State of Emergency); e) 2020 년 3 월 12 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모든 주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관련 행동 규칙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COVID-19)를 통제하기 위한 주 정부 및 지역 공중 보건 당국의 명령 및 지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제 N-25-20 호; f) 2020 년 3 월 11 일 미국 대통령이 발행한 코로나 19 에 관한 성명서 (Proclamation) 제 9984 호; g) 2020 년 3 월 19 일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발행한 행정 명령(Executive Order) 제 N-33-20 호; h) 미국 질병 통제예방 센터(CDC)가 발행한 “요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감염 의심자로

판명된 환자의 감염 예방 및 통제에 대한 임시 추가 지침서”; i)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국이 발행한 2020년 4월 1일에 안면 가리개 지침(Face Coverings Guidance)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코로나 19 지침, 및 j) 캘리포니아 주 “회복 지침(Resilience Roadmap)”. 캘리포니아 주의 COVID-19 감염 감축 계획 및 캘리포니아 주민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허용되는 부문 활동의 조정 계획 및 2020년 8월 28일 캘리포니아 주 전체에 걸친 공중 보건 책임자 명령입니다.

20. 본 명령은 주로 사람들이 집합하는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가령: 1) 광범위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근접한 거리에서 장기간 모여 있게 됩니다. 3) 다수의 사람들이 한 행사에 참석하였거나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노출 경로를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4) 모인 사람들이 적절한 방역 지침을 실행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21. 본 명령은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마련하는 한편, 이런 기회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 대중을 코로나 19로부터 보호하는 필수 조치가 추가로 실행될 수 있도록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필수 산업 분야 종사자 또는 영업을 재개하는 사업체의 고객들/의뢰인들이 추가적인 보호 장치 기능을 도모합니다.
22. 이 명령을 발행함으로써, 영업을 재개하는 사업체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모든 직원과 이용 고객에게 사회적 안전 거리 유지, 위생 관리 및 감염 선별 검사 관행에 필요한 절차를 구현하고 실행하도록 요구합니다.
23. 본 명령은 미국 및 세계 공중 보건 당국,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캘리포니아 주 공중 보건 보건국의 공중 보건 책임관의 주요 지침 발표에 따라 발행되었습니다.
24. 캘리포니아 보건 서비스 부서가 발효한 각 지침에 대한 제시된 정당성에 따른 사실 및 상황에 대한 진술은 본 명령의 참조되어 승인 및 통합됩니다.
25. 공중 보건 및 안전법 제 120175.5(b)항을 준수하여 카운티의 모든 정부 기관은 본 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 기관의 통제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기관의 관할 구역 내의 모든 장소와 행사 일정에 본 명령을 유효해야 합니다.
26. 본 명령 위반 시, 벌금형,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 보건 안전법 제 120295 항.)

27. 필요한 정도와 규모에 따라, 본 명령을 지방 경찰관(보안관) 및 경찰국장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법 제 26602 항 및 제 41601 항, 그리고 공중 보건 및 안전법 제 101029 항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28. 본 명령이 발행되고 나면, 2020 년 8 월 7 일 발행된 공중 보건 책임관의 명령 및 긴급 규정(Order of the Health Officer and Emergency Regulations)을 대체합니다.

이와 같이 명령합니다:

일자: 2020 년 9 월 9 일

Wilma J. Wooten, M.D., M.P.H.
(윌마 제이 우튼, 의학박사, 공중보건 석사)
Public Health Officer (공중 보건 책임관)
County of San Diego (샌디에고 카운티)

비상 규정(EMERGENCY REGULATIONS)

샌디에고 카운티의 긴급 서비스 국장으로서, 본인은 정부 법 제 8634 조 및 샌디에고 카운티 법 제 31.103 항에 따라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관한 규정을 공표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 사항은 상기 언급된 공중 보건 책임관 명령(Health Officer Order) 기간 동안 유효하며 전체 내용이 참조사항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공중 보건 책임관 명령은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공표되어야 한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거나 준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도외시하는 자는 벌금형,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부 법 제 8665 항.)

일자: 2020 년 9 월 9 일

Helen Robbins-Meyer (헬렌 로빈스-마이어)
Chief Administrative Officer (수석 행정관)
Director of Emergency Services (응급 서비스 국장)
County of San Diego (샌디에고 카운티)